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5 선고 2022가단51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전남 보성군 E 전 1402㎡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10. 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전남 보성군 E 전 1402㎡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1. 11. 15. 접수 제15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허정룡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소외 F조합으로부터 소외 D(이하 'D' 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법인입니다.

2) 소외 G이 F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D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D는 G의 연대보증채무입니다.

3) 피고는 D의 동생으로, 소외 망 H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소외 G은 아래와 같이 F조합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사용하고 기한이익의 상실하였습니다.

2) 이후 소외 F조합과 주식회사 I가 2009. 7. 15.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1차 양수인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은 주식회사 J -> K 유한회사 -> 주식회사 L -> 주식회사 M -> N 주식회사에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으며, N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는 2019. 8. 19.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위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에 관한 일체의 지위와 채권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를 최종적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 채권양도통지서)

3) 이에 따라 2022. 2. 15.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7.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3호증 - 지급명령 결정문)

3. 사해행위 및 D의 무자력

1) 위와 같이 D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2) 우리법원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1) 우리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D과 피고는 가족으로써 피고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 원물반환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10.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1. 11. 15. 접수 제1547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